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**《외국인투자 국제해운업** **관리규정》****개정에 대한 결정** 교통운수부, 상무부 령 2014년 제8호《<외국인투자 국제해운업 관리규정> 개정에 대한 결정》이 2014년 4월 4일의 제3차 부간 회의에서 통과되었으므로 이에 공표하며, 2014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.교통운수부 부장 양촨탕상무부 부장 고우후청2014년 4월 23일교통운수부, 상무부는 <외국인투자 국제해운업 관리규정>에 대해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.1. 제4조 중의 “외국투자자가 교통부와 상무부의 비준을 받고 아래의 형식으로 국제해운업에 투자하여 경영하는 것을 허용한다.”를 “외국투자자가 이 규정에 따라 비준을 받고 아래의 형식으로 국제해운업에 투자하여 경영하는 것을 허용한다.”로 수정한다.2. 제17조를 “국무원이 비준한 《내륙 및 홍콩간 보다 긴밀한 경제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》, 《내륙과 마카오간 보다 긴밀한 경제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》 및 보충협의, 그리고 <해협양안 해운협의>, <해협양안 경제협력 기본협의>, <해협양안 서비스무역협의> 및 관련 보충협의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준한다.”로 수정한다.3. 제6조, 제8조, 제14조 중의 “상무부”, 제12조, 제15조 중의 “상무부 또는 그가 수권한 부문”을 “소재지 성급 인민정부 상무주관부문”으로 수정한다.4. 조항 중 모든 “교통부”는 “교통운수부”로, “성급 인민정부 교통주관부문”은 “성급 인민정부 교통운수주관부문”으로 일괄 수정한다.이 결정은 2014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.<외국인투자 국제해운업 관리규정>은 이 결정에 따라 상응하게 수정한 후 다시 반포한다. |  | **关于修改《外商投资国际海运业管理****规定》的决定**交通运输部、商务部令2014年第8号《关于修改〈外商投资国际海运业管理规定〉的决定》已于2014年4月4日经第3次部务会议通过，现予公布，自2014年4月23日起施行。交通运输部部长　杨传堂商务部部长　高虎城2014年4月23日交通运输部、商务部决定对《外商投资国际海运业管理规定》作如下修改：  　 一、将第四条中的“经交通部和商务部批准，允许外商采用以下形式投资经营国际海运业”修改为“依照本规定经批准，允许外商采用以下形式投资经营国际海运业”。  　 二、将第十七条修改为：“经国务院批准的《内地与香港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》、《内地与澳门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》及其补充协议，以及《海峡两岸海运协议》、《海峡两岸经济合作框架协议》、《海峡两岸服务贸易协议》及相关补充协议另有规定的，从其规定。” 　　三、将第六条、第八条、第十四条中的“商务部”以及第十二条、第十五条中的“商务部或其授权的部门”修改为“所在地省级人民政府商务主管部门”。 四、将条文中所有“交通部”统一修改为“交通运输部”，所有“省级人民政府交通主管部门”统一修改为“省级人民政府交通运输主管部门”。 本决定自2014年4月23日起施行。 《外商投资国际海运业管理规定》根据本决定作相应修改，重新发布。 |